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36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문진석・박정현・이건태

윤종군 • 김태년 • 김윤덕

강준현 • 이연희 • 장종태

전용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·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는 것임(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,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,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전담 생활 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

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 제23조(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 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1. ~ 5. (생 략) <신 설> 6.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 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 을 위한 연구 <u>6.</u> (생 략)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<신 설> 제23조의2(물류취약지역 협의체 의 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생활물 류서비스사업자,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<u>, 그</u>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를 구성 ·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사 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

항에 따른 전담 생활물류서비 스사업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・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전 당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